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78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이병훈·김승원·김영호

남인순 • 박성준 • 오영환

유영찬 • 홍영표 • 이상헌

이성만 • 이원택 • 정청래

조승래 · 조오섭 · 주철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.

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·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,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,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.7%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 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 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홍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3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・② (생	제5조(기금의 용도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	③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	
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의2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
	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
	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
	해 구제 사업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